

2000. 12. 23(土)

제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總務社會委員會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정과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가. 제안이유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 및 장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나. 주요내용

○ 개정

- 조례 제2조(정의) 제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을 비롯, 동조 제3호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 부조 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 ”로 개정

○ 신설

- 조례 제9조(장학생의 선발) 제1항 제2호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읍·면·동장의 추천인원이 예산의 범위 이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규적검토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동법에 의한 보호 및 관리대상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관련 용어 등의 개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정사항은 적법함.
-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은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또한 조례 제6조 제1항1호의 개정근거가 됨은 이론이 없으며,
- 아울러 동 조례는 2000. 11. 10 ~ 11. 29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은 없었고 2000. 11. 30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적 검토

- 대체입법에 수용된 용어의 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 조례 제9조(장학생의 선발)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중개정조례안 1부. 끝.